

공·사상 심사 결정통지서

청 구 인	성명	소속	계급
	군번	생년월일	연락처
심사 결과			
이 유			

[] 보통 [] 중앙 공·사상심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20 년 월 일

소방기관의 장 (서명 또는

인)

귀하

재심사 청구 안내

- 1.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2. 중앙 공·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재심사 절차

